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 —

(유형문화재과, 발굴제도와 관련)

2015. 10.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1. [보존과학센터] 문화재 등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3
2. [연구기획과] 연구개발 용역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통보)	5
3. [연구기획과] 연구개발 용역사업 책임연구원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주의요구)	6
4. [건축문화재연구실] 국가지정문화재 석탑 기록화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8
5. [행정운영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9
6. [건축문화재연구실]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11
7. [자연문화재연구실] ‘천연기념물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2차)’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12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8. [고고연구실] 한성백제 토기 가마 제작 및 부대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14
9. [연구기획과] 국제교류 종료 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주의요구)	15
10. [자연문화재연구실] 화석표본·암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16
11. [행정운영과] 계약의 지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18
12. [유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유물취급규정 관련 사항 (법령상 개선요구)	19
13. [연구기획과] 연구 성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20
14. [연구기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에 관한 사항 (주의요구)	22
15. [연구기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2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의 정확한 인식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총 391명(정규직 165명, 청원경찰 19명, 비정규직 207명)이고,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처리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요 연구 과제 성과,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시설공사 추진 적정성, 국유재산 관리, 일상감사 이행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6. 22. 부터 같은 해 7. 10. 까지 15일간 감사인력 4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 10. 15.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국립문화재연구소

개 선 요 구

제 목 문화재 등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국가 및 발굴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훼손된 문화재(유물)을 의뢰받아 이를 보존처리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굴전문기관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에는 문화재 보존처리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발굴조사비용 산출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5조(직접경비) 별표5(직접경비 산출방법)에 유물의 보존처리 약품비 및 보존처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는 발굴전문기관에서 발굴한 유물에 대하여 보존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존처리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존과학센터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발굴전문기관 10개 기관에서 발굴조사 시 발견한 중요 유물 349건에 대해 보존처리 비용의 유·무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부터 보존처리 협조 요청을 받은 후 무료로 보존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존과학센터는 발굴전문기관에서 발굴한 중요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비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은 발굴전문기관에서 발굴한 중요 유물 보존처리 비용에 대한 적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통 보

제 목 연구개발 용역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6년부터 연구개발사업으로 “우레탄 및 에폭시 수시를 이용한 유구 전사 방법” 등을 개발 완료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개발 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연구결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개발 완료하였으면 이를 전국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2015년 자체종합감사일까지 완료한 연구개발사업 중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연구 등 8건은 개발 완료하였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일부 기관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완료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결과물은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보수재료 등 개발이 완료된 8건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문화재보존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 용역사업 책임연구원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3년과 2015년까지 “전통 금사 제작 기술 복원을 위한 전통 금사 제현” 등 9건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 III. 2.(인건비). 참여 연구원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용역 참여업체가 대학의 경우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시 책임연구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시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능력에 대해 주관적 평가만 실시함으로써 책임연구원이 부교수 이상이 아닌 조교수로 되어 있는 제안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책임연구원의 기준이 미달된 사업자가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8건)하거나 진행중(1건)인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책임연구원 적용기준 미달 용역현황】

번호	연도	과 제 명	계약금액 (원)	적용규정	제안서
1	2013	전통 금사 제작 기술 복원을 위한 전통 금사 제현	133,000,000	책임연구원	조교수
2	2013	여주보 설치에 따른 주변 문화재의 환경영향 평가 연구 2	106,500,000	책임연구원	조교수
3	2013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방염제 성능평가 및 도포기준 1	115,454,540	책임연구원	조교수
4	2013	진동을 이용한 석조문화재의 구조안전진단기법 개발 1	112,987,840	책임연구원	조교수
5	2014	여주보 설치 후 문화재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보존방안 연구	113,000,000	책임연구원	조교수
6	2014	중요 궁궐 및 관아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	40,036,360	책임연구원	조교수
7				책임연구원	조교수
8	2014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방염제 성능평가 및 도포기준 연구 3차	191,000,000	책임연구원	조교수
9	2015	중요 궁궐 및 관아 건축문화재 수종에 대한 연구	164,963,640	책임연구원	조교수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연구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석탑 기록화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재 기록화 사업으로 “국가지정 석탑 현황기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사업을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물인 석탑 실측도면을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석탑의 멸실, 훼손에 대비한 3D스캔, 정밀조사, 도면작성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므로 석탑에 대한 정확한 실측도면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년까지 동 용역시 석탑에 대한 수작업으로 실측없이 3D스캔만한 후 2D 도면으로 변경함으로 일부 2D도면 상 석탑 규모가 일부 부적정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수작업으로 다시 실측하여 보다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경상북도의 석탑” 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부적정한 도면을 그대로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에 제출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석탑의 원형자료로 보관 관리하고 있어 동일 석탑의 규격이 다르게 기록·관리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부정확한 도면은 수정할 필요성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관 중인 석탑 18기 실측도면을 조속히 수정·보완하고 석탑의 실측도면상 수치가 서로 상이하여 석탑 규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국립문화재연구소 정기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①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법이 정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총 6건(용역 1건, 공사 5건)에 대해 최근공사가 완료되거나 착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관리부에 누락됨에 따라 정기하자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번호	연도	과 제 명	계약금액 (천원)	미실시사유	비고
1	2014	천연기념물센터 인터랙티브 제작 및 부스 설치 용역	47,788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용역
2	2014	기록관 서고 리모델링 공사	7,900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공사
3	2014	중앙문화재센터 수장고 및 주요시설 cctv 카메라 교체	8,272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공사
4	2015	천연기념물센터 연못주변 테크시설 보수공사	9,359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공사
5	2015	천연기념물센터 안내태스크 제작 설치공사	19,500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공사
6	2015	천연기념물센터 연못 안전펜스 및 관리용 cctv 설치	9,922	하자보수관리부 누락	공사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누락된 6건의 사업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부에 등재하고 미 실시된 하자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09~'12년에 걸쳐 서울 등 4개 역사도시를 대상으로 「역사도시 건축문화재의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1,159백만 원)」를 수행하였고 상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13년에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222백만 원)」을 개발하였다.

상기 프로그램은 건축문화재 및 주변지반에 대한 공학적 분석 등을 통해 위험도를 4단계(정상, 주의, 위험, 긴급)로 구분하고 지도상에서 실시간 지진경보에 따른 문화재 위험도를 단계별로 표시되도록 구현하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 대비 건축문화재와 주변지형·배수체계 등 분석을 통해 강수량(기상정보)과 연계하여 예상 침수범위 등 피해 위험도를 5단계(정상, 관심, 주의, 위험, 긴급)로 구분 실시간으로 지도상에서 구현하도록 개발하였으나 자체종합감사일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미 운용 상태로 자체 보관 중에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역사도시 건축문화재 지진·홍수 재해위험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및 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2차)'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2차)'에 대해 (주)○○○○○와 계약체결(2015.3.25./1,901,242천 원)하고 2015.4.1.~11.11.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자체종합감사일까지 내·외벽 단열 및 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자체감사기간 중 상기 공사에 대해 공사현황을 확인한 바 (주)○○○○○는 수장고 외벽 하부 단열재에 대해 계약서 상 서로 상이(설계도면/발포폴리스티렌, 내역서/압출스티로폼)하게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발포폴리스티렌으로 단열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외벽 산화스텐 시공부는 이중으로 단열재(단열 외부성능 기준표상 내벽으로 설정됨)가 적용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내역 조정이 필요하다.

【단열재 관련 금액조정 현황】

(단위:원)

구 분	규격	당초 변경	수량	재료비		노무비		합계		변경 사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계	2종	당초			14,688,525		6,386,415		21,074,940	
		변경			7,495,412		1,212,161		8,707,573	
		증감			- 7,193,113		- 5,174,254		-12,367,367	
압출스티로폼	가등급 1호, 150mm	당초	399㎡	20,609	8,222,991	3,425	1,366,575	24,034	9,589,566	도면과 내역이 상이
		변경	0㎡							
압출스티로폼 본드 붙임	벽 가등급 1호, 100mm	당초	498㎡	12,983	6,465,534	10,080	5,019,840	23,063	11,485,374	이중 단열
		변경	0㎡							
발포폴리스티렌 (벽공간)	가등급 1호, 150mm	당초	0㎡							
		변경	278.05㎡	20,276	5,637,741	3,038	844,715		6,482,456	
압출스티로폼 (벽공간)	가등급 1호, 100mm	당초	0㎡							
		변경	120.95㎡	15,359	1,857,671	3,038	367,446		2,225,117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으로 공사비 재산정 결과 15,956,540원(원가계산 적용금액/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등)의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2차)' 중 물량 과다산정 및 계약서상 상이하게 적용된 단열재 계 15,956,540원을 감액 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한성백제 토기 가마 제작 및 부대시설을 설치' 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부동산과 그 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고고연구실)는 2014년에 한성백제권 건축 및 토기제작기술 복원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현 토기 가마 및 덧집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다.

(단위:천원)

설치지번	용도	공사금액	구 조	완료일자	비고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459번지 / 대	가마 덧집	20,000	· 구조 : 경량철골조 · 지붕 : 합석기와 · 연면적 : 75㎡	2014.10.16.	
	토기 가마	9,130	· 흙가마 1기	2014.10.06.	

그러나, 공사완료 후 자체종합감사일까지 국유재산에 미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유재산에 미등재 된 토기 가마 및 덧집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성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주 의 요 구

제 목 국제교류 종료 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 예규 제21호, 2013.6.20)」 제20조(결과보고서) 제①항은 국제교류를 추진한 자는 국제교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파견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3년부터 2015.7월 자체종합감사일까지 '한일 고대문화 공동연구 연구자 파견' 등 총 134건 398명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였다.

상기와 같이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면 국제교류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에 따라 파견연수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및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체 134건 중 총52건(2013년 18건, 2014년 28건, 2015년 6건)을 제출 기한보다 지체 제출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되지 않았으면 이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 최대 215일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교류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개 선 요 구

제 목 화석표본·암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2350호, 2014.1.28.)(이하 매장법)」 제2조(정의)에 따라 화석·암석 등은 매장문화재에 속하며,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 귀속) 및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동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는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토록 하며, 이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석및화석산지보존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141호, 2014.12.26.)」 제15조(화석의보관·관리) 제⑤항은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수록대상 화석표본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는 「화석표본 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관·관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자체종합감사일까지 총 1,055점의 화석표본(895점), 암석(160점)을 보관·관리하고 있고, 그 중 129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수습한 매장문화재이다.

<표-1> 자연문화재연구실 보관중인 화석표본·암석 등 지질표본의 확보 경로별 내역

구 분	확보개체 수	비고
지자체 등의 발견신고에 따른 문화재 수습	525	비귀속 대상 문화재
자체조사 후 발견문화재 수습	129	
기 천연기념물에 대한 현상변경 후 이관	17	
기존 소유자(학계연구자 등)의 기증	384	
계	1,055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상기와 같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화석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 하였으면 「매장법」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에 따라 아래의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를 준수하여 ‘국가귀속문화재’ 혹은 ‘비귀속 대상 문화재’임을 결정한 후,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화석 및 화석

산지 보존관리 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비귀속 대상 문화재’를 보관할 때에는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5조(화석의보관·관리)에 따라 「화석표본 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보관·관리·활용하여야 함에도 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하시기 바라며, 보관중인 화석표본 등의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의 지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독·검사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 내에 정당하게 계약을 완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총 2건 3,556,530원의 지체상금(1건, 472,500원) 및 규격 미달에 대한 정산대금(1건 3,084,030원)을 미징수 및 과지급 하였다.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자	지체 및 규격미달 등 현황	환수대상금액(원)
물품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조사보고서 발간	'14.7.2 ~'14.10.31 21,000,000원	○○○○○ ㈜○○○○○	15일 지체 납품	472,500
물품	연해주의 문화유적4 보고서 발간	'14.10.13 ~'14.12.22 39,000,000원	㈜○○○○○	보고서 규격 미달 (44page 감소)	3,084,030
계	2건				3,556,530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 등으로부터 지체상금 및 과지급금 3,556,53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유물취급규정 관련 사항

관계기관 유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내 용

유형문화재과는 우리 청이 소장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유물취급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 상 유물의 대여는 최대 2년간만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한 「국가귀속문화재의관리등에관한규정(발굴제도과 소관)」은 유물 대여의 최대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귀속문화재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283점(‘07년 14점, ‘10년 261점, ‘11년 8점) 및 강화역사박물관에 90점(‘10년 90점)의 유물을 대여한 후 상기 규정에 유물대여 최대기한이 명시되지 않음을 근거로 2014.12.31.까지 대여를 연장·승인하는 등 최대 7년간 유물을 대여하였으나, 「유물취급규정」에 따르면 유물을 최대 2년간만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동 행위는 「유물취급규정」을 위반하였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청 소유 유물 대여에 대한 소관 과별 규정이 서로 달라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에 혼란을 주고 유물의 대여 시 상이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유물 대여에 대한 통일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유형문화재과장과 발굴제도과장은 「유물취급규정」과 「국가귀속문화재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서로 다르게 규정된 유물대여 가능기간에 대해 상호 협의하시어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연구 성과품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7호 2011.12.23.)」 제25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는 연구소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 제21호 2014.3.6.)」은 연구과제의 후속성과 관리기간을 연구과제의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며 용역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용역완료 후 2년 이내에 SCI급 및 KCI급 논문 등재, 특허 등을 최종성과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2012년에 시행된 총 45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용역 중 40건에 대하여 상기의 최종성과물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7월까지 총 26건의 최종성과물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고,

〈표-1〉 R&D사업 최종성과물 제출 지체현황 (2011~2012)

계약년도	계약건수(A)	논문 등 요구건수(B)	지체건수(C)	지체율(C/B)	제출기한
2011	19	19	11	58%	2013.12.
2012	26	21	15	71%	2014.12.
계	45	40	26	65%	

상기의 〈표-1〉과 같이 최종성과물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이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여 2015. 7월 현재 18개월 이상 제출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평가지침」은 과제수행자 선정시 최종성과물 제출 미이행자에 대해 감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2014년까지 R&D용역 45건을 경쟁의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음에도 단독입찰로 22건이 수의계약되었으며, 2014년의 경우 2011년~2012년 과제에 참여하여 계약당시까지 최종성과물 제출을 미이행한 연구자 5명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 발주시 이전 용역의 최종성과물을 미제출한 자가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상기 규정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용역 26건의 성과물에 대해 SCI급 및 KCI급 논문 등재, 특허 등을 최종성과물로 제출토록 하시고, 단독응찰시 최종성과물 제출 미이행자 감점처리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용역 사업 시행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 개발 과제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 산정·사용·관리·정산 및 운용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용역 사업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참여연구원이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사업 착수시 제출한 착수관계 서류(산출내역서, 참여 연구인력 등)를 확인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학생(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일 경우에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내역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4년 ‘금사를 이용한 직금직물 제작 기술 재현 사업’ 등 2개 사업, 2015년도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방염제 성능 평가 및 도포기준 사업’ 등 2년간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내역 조정 없이 당초 계약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여 총 27,524,990원의 용역비가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과다 계상 내역】

(단위:원)

연도	과 제 명	계약 연구원	참여 연구원	당초 인건비	변경 인건비	차액
'14	금사를 이용한 직금직물 제작 기술 재현	연구보조원(3명)	석사(3명)	10,986,120	6,390,000	4,596,120
'14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방염제 성능 평가 및 도포기준 연구	연구보조원(5명) 보조원(3명)	석사(5명) 학사(3명)	14,500,000	7,981,380	6,518,620
소계	2건	11명	11명	25,486,120	14,371,380	11,114,740
'15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방염제 성능 평가 및 도포기준 연구	연구보조원(6명) 보조원(5명)	석사(7명) 학사(4명)	37,500,000	21,089,750	16,410,250
합계	3건	22명	22명	62,986,120	35,461,130	27,524,990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 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 내역】

- 2013년도 : 국가지정 석탑 현황기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등 2,828 백만 원
- 2014년도 : 천연기념물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지 보존연구 등 2,500 백만 원
- 2015년도 :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방염제 성능평가 및 도포기준 등 2,500 백만 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임.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기관은 법령근거가 없어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기에 연구개발비(260)목으로 주관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목 및 세부규정 현황】

부처	구 분		세부규정
	체결방법	예산과목	
교육부	협약	350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협약	350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부처	구 분		세부규정
	체결방법	예산과목	
농림축산식품부	협약	350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협약	350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협약	35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보건복지부	협약	350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35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안전행정부	협약	350	「안전행정부 소관 재난안전관련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해양수산부	협약	350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협약	350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	260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기상청	협약	350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협약	35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문화재청	계약	260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림청	협약	350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소방방재청	협약	350	「소방방재청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기업청	협약	350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위의 표와 같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이 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운용하고 있고,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마련·적용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같이 준용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 의무가 없음에도 공동관리규정이나 자체규정을 근거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위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